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71

발의연월일: 2024. 10. 18.

발 의 자:정태호·임오경·서미화

진선미 • 복기왕 • 정성호

장경태 · 강준현 · 안태준

정진욱 • 한정애 • 윤후덕

문대림 · 전재수 · 박홍배

김남희 • 이학영 • 김영배

황운하 • 윤호중 • 김영환

최기상 • 오세희 • 한병도

이수진 • 박홍근 • 황 희

김주영 의원(28인)

제안이유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 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해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보수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에 대한 경징계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성과 책임성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

선하고,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세무의 날'을 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세무사등록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직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12조의5제1항 단서).
- 나. 세법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 정부가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 다. 세무법인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추가함(안 제16조의5제3항 단서 및 제16조의10제1항 단서).
- 라. 세무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
- 마.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가 세무의 날과 관련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조 및 제1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의5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보수) ① 세무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 ②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직무에 대하여 제1항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조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를 위하여 세무사를 위임 또는 위촉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보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사무소만 두는 경우에는 이사 3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제16조의10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의5제3항 단서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수 없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명하는"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한"을 "세무사를 징계한"으로 한다.

3. 2년 이내의 일부 직무정지

제20조의2제5항 전단 중 "제15조"를 "제15조, 제15조의2"로 한다. 제20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7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한국세무 사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세무의 날) ① 성실납세의 기초가 되는 세무의 중요성을 국

민에게 널리 알리고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세무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조 및 제1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 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u><단서 신설></u>	한다. 제12조의5(사무직원) ①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10호
②·③ (생 략) <u><신 설></u>	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 이 될 수 없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보수) ① 세무사는 제2 조에 따른 직무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 ② (생 략)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단서 신설>

④ ~ ⑥ (생 략)

제16조의10(사무소) ① 세무법인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 를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② 성실	한 납서	를 위	하여	<u>「소</u>
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에
따른 조	무에	대하여	제1	항의
보수기준	는에 관	한 사형	하은	 기획
재정부정)관이	한국서]무사	회와
협의하여				<u>.</u>

③ 제2조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를 위하여 세무사를 위임 또는 위촉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보수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주사무소만 두는 경우에 는 이사 3명 이상이 세무사이 어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10(사무소) ① -----

제17조(징계)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 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에서 정하는 징계를 <u>명할</u> 수 있다.

- 1. 2. (생략)
- ② (생략)
- 1. 2. (생략)

<신 설>

<u>3.</u>·<u>4.</u> (생 략)

- ③ ~ ⑤ (생 략)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정계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제17조(징계) ①
<u>할</u>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2년 이내의 일부 직무정지
<u>4.·5.</u>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6
 .
⑦
<u>세무사를 징계한</u>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 ⑧ ⑨ (생 략)
-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저 ~ ④ (생 략)
 -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 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 2조의5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 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 ⑥ (생 략)
-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 저의 위탁) ① ~ ③ (생 략) <<u><</u>신 설>

·
8 · 9 (현행과 같음)
세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5
제15조,
제15조의2
⑥ (현행과 같음)
세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
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7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한
국세무사회의 회원에 대한 징

게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4(세무의 날) ① 성실납세의 기초가 되는 세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날로한다.
② 국가는 세무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